



문서번호 : 20-10-베트남전TF-0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 TF
(담당: 임재성 변호사 (010-4748-0807))

제 목 :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전송일자 : 2020. 10. 13.(화)

전송매수 : 총 7매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0. 14.(수) 14:0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5564). 위 소송의 원고와 대리인들은 위 판결을 청취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①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 ②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을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 본 소송에서 공개청구한 정보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광남성 풍니·풍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풍니·풍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풍니·풍넛 학살사건은 당시에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습니다. 민변 TF는 국정원이 현재 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위 풍니·풍넛 학살사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최근 유엔 특별기구에 피해사실을 진정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확정되었으나 국정원이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비공개 재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비공개 재처분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2020. 1. 31. 사실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 즉, 3차례의 정보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이 다시 항소를 한 것이며, 이 비공개 재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일 선고됩니다. 따라서 내일 선고되는 판결은 국정원의 부당한 재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라는 특수함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2018. 12. 28.자 TF 성명서 참조)

5. 위 기자브리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2018. 12. 28.자 TF 성명서

2020년 10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문서번호 : 18-12-베트남전TF-01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민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제목 : [성명]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전송일자 : 2018. 12. 28. (금)

전송매수 : 총 4매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국정원은 비공개 재처분을 마땅히 직권취소 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왔다. 청구 대상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팡남성 풍니·풍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풍니·풍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였다. 풍니·풍넛 학살사건은 당시에 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국정원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11. 2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은 …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이라며 역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ㄴ60221 판결).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풍니·풍넷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풍니·풍넷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풍니·풍넷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

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풍니·풍넷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풍니·풍넷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풍니·풍넷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 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풍니·풍넷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국정원 상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공개청구 소송 경과정리

2017. 8. 2. 원고(민변TF 소속 임재성 변호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함, 아래 상자 참조) 공개청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 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풍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을 공개청구합니다.

2017. 8. 16. 국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이라고 함)을 내림

2017. 11. 3.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 7. 27.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中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969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풍니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이 사건 정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고는 민변 TF 소속 변호사로서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의 존부에 대한 규명 등 소속단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적으로 외교관계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문제로서 시민단체의 어떠한 행위와 외교문제로 직접 비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분명치 한다는 점

2018. 8. 17. 국정원 항소
2018. 11. 29. 서울고등법원, 국정원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221 판결)
2018. 12. 21. 항소 기각 판결 확정
2018. 12. 21. 국정원,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 재처분(이하 '이 사건 2차 비공개처분'이라고 함). 거부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적시.
2019. 3. 18.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2차 비공개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 소장 접수. '사법부의 정보공개 취지 판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권한남용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정보 공개로 확인되는 것은 1969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진술자의 성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소장의 요지.
2019. 5. 14. 법무법인 바른, 피고 국정원 소송위임장 제출
2019. 12. 6.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재판부 비공개열람 진행
2020. 1. 31. 서울행정법원 정보 중 생년월일 등을 일부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 선고

이후 국정원 항소 및 항소심 변론 진행.